
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2. 13.(월) 13:30	배포 일시	2023. 2. 13.(월)
담당 부서	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	책임자	과 장 이정미 (044-201-7360)
		담당자	사무관 남궁현 (044-201-7364)

환경부 장관, 불법폐기물 발생현장 점검

- 조직적 폐기물 방치·투기행위 근절방안 적극 추진 -

-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방치 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한다.
 - 이날 현장점검에는 오성환 당진시장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하며, 지자체 관할 사업장의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폐기물 차단대책 추진상황을 살펴본다.
- 환경부는 이날 현장점검을 계기로 조직적 폐기물 방치·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근절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.
 - 우선 경찰청(국가수사본부)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조직적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.
 -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.
-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'지능형폐기물 관리시스템'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까지 확대 적용*할 예정이다.

* 건설폐기물('22.10월) → 지정폐기물('23.10월) → 사업장일반폐기물('24.10월) 등 순차 시행

- ‘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’은 운반차량의 위치정보(GPS), 폐기물처리 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폐쇄회로텔레비전(CCTV) 영상,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한국환경공단의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하기 때문에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계근값을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.
- 환경부는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(이하 센터)와 연계하여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.
 - 환경부-지자체-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,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. 허용보관량의 80%를 초과하여 보관 중인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는 반입·반출 폐기물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된다.
-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.
 -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 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한다.
 - 또한 마을 단위 현수막 게시, 반상회 등을 통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.
-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지자체와 협력하여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하여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”면서, “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,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”고 말했다.

- 붙임 1. 불법폐기물 현장 방문계획
 2. 불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
 3. 전문용어 설명. 끝.

□ 방문 개요

○ 일 시 : '23.2.13(월) 13:30~14:00

○ 장 소 : 충남 당진시 고대면 당미로 121-7(옥현리 809-1)

※ (주)뉴그린비료, 가축분뇨 혼합 음식물류폐기물 약 18,000톤 방치

○ 참석자

- (환경부) 장관, 금강유역환경청장, 자원순환국장, 폐자원관리과장,
- (당진시) 시장, 경제환경국장, 시의원, 마을이장 등

○ 주요내용 : 방치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계획 등 현장점검

붙임 2**불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**

□ 전수조사로 확인된 불법폐기물 191.3만 톤 중 현재 161.9만 톤 (85%)을 처리 완료

○ 나머지 29.4만 톤은 관할 지자체가 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중

< 전국의 불법폐기물 발생현황, 발생연도 기준 >

(단위 : 만톤, ()는 개소)

구 분	합 계	'16년 이전	'17년	'18년	'19년	'20년	'21년
합 계	191.3(471)	73.4(75)	52.2(91)	24.6(155)	21.7(87)	16.7(55)	2.7(8)
방 치	115.7(98)	52.5(22)	40.8(23)	8.2(23)	7.8(15)	4.5(10)	1.9(5)
투 기	72.2(364)	20.9(53)	11.4(68)	14.7(126)	12.2(69)	12.2(45)	0.8(3)
수 출	3.4(9)	-	-	1.7(6)	1.7(3)	-	-

○ **불법폐기물**

-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
- ▶ **(방치폐기물)**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취소 및 폐업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체의 사업장 내 법정 보관기일을 초과하여 방치된 폐기물
- ▶ **(투기폐기물)** 폐기물 배출자 또는 처리업체 등이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지 않고 임야, 임대부지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

○ **올바로시스템**

- 사업장폐기물 배출·운반·처리자가 입력한 폐기물의 인계·인수에 관한 사항(폐기물 종류·양 등)을 관리하는 정보시스템
(www.allbaro.or.kr)

○ **지능형폐기물관리시스템**

-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*를 실시간 전송, 수신받아 모니터링하고, 정보를 분석하여 불법행위를 탐지·예방하는 시스템
- * (수집·운반) ①운반차량의 위성항법장치(GPS) 등을 통한 실시간 위치 정보
(처분·재활용) ②진입로, 계량시설 및 보관시설 CCTV 영상정보, ③계량시설의 계량값

○ **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**

- 폐기물 방치·투기 등 폐기물 관련 불법사례 지속 발생으로 사회적·환경적 피해가 심각하나 감시체계 미흡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('20.5), 불법폐기물의 신속 처리 등 기술지원
- ※ (설치근거)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4 및 시행령 제23조의6, 시행규칙 제68조의4